



#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46762  
Republic of Korea

Phone :+82-70-8799-8332  
Fax :+82-70-8799-8319  
E-mail : wskwon@krs.co.kr  
Person in charge :  
KWON Wooseok

**No : 2025-IMO-14**  
**Date : 30 September 2025**

## 제목: BWM 협약에 따른 전자 평형수 기록부 사용을 위한 절차 안내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 Convention) A-1.9규칙 및 B-2.1규칙 개정사항을 결의서 MEPC.383(81)로 채택함으로써 평형수 기록부의 전자 기록부 형식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2025년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동 기술정보를 통해 전자 평형수 기록부의 사용을 위한 승인과 선박별 설치 후 성능 검증에 따른 선언서(declaration) 발행에 관한 절차 요구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약본부장

한국선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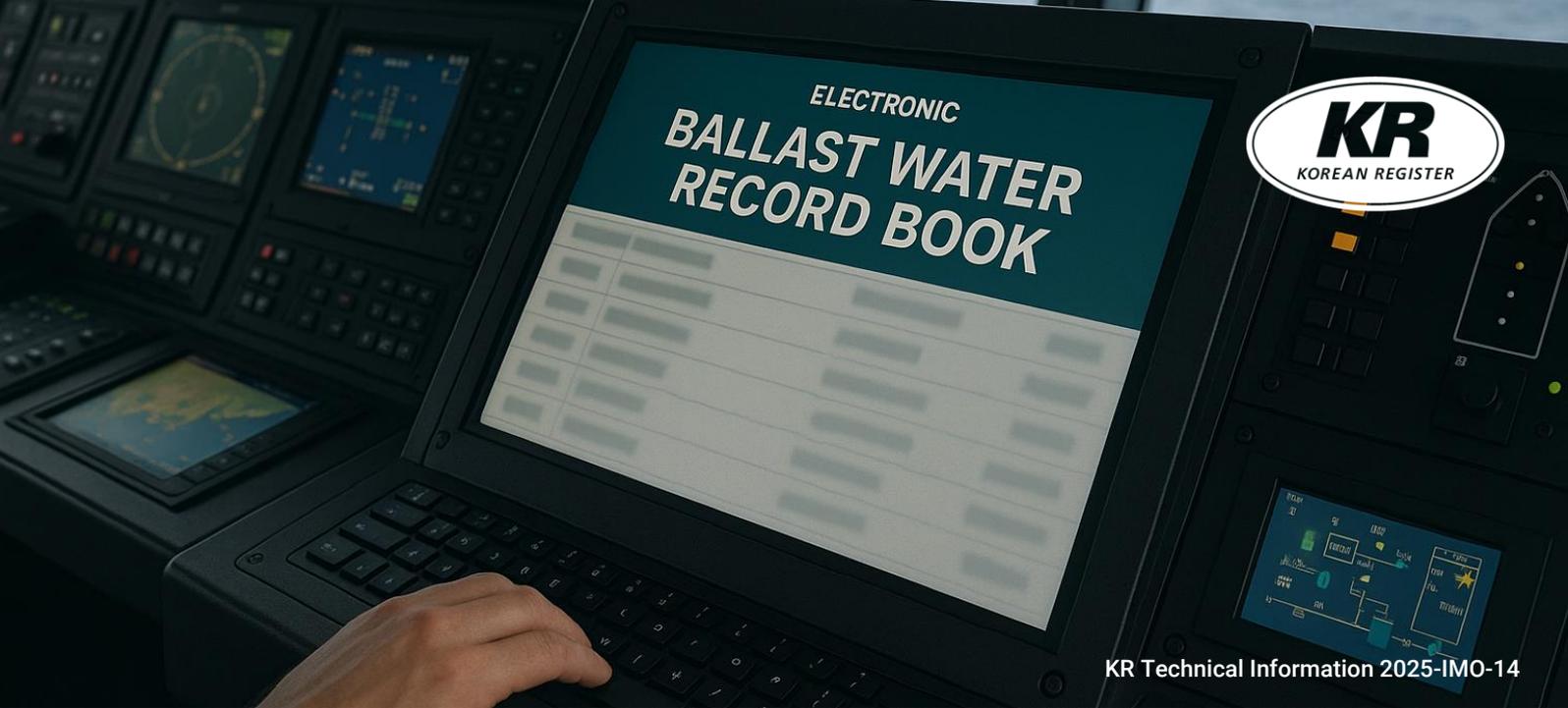
첨부: BWM 협약에 따른 전자 평형수 기록부 사용을 위한 절차 안내 (국-영문)

배부처 : 검사원, 선사, 제조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

(Distributions: KR surveyors, Ship owners, Manufacturers, Other relevant parties)

**Disclaimer:**

While every possible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technical information, the Korean Register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any errors or omissions contained herein, nor shall it be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technical information.



KR Technical Information 2025-IMO-14

# BWM 협약에 따른 전자 평형수 기록부 사용을 위한 절차 안내

## 배경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 Convention) A-1.9규칙 및 B-2.1규칙 개정사항을 결의서 MEPC.383(81)로 채택함으로써 평형수 기록부의 전자 기록부 형식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2025년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동 기술정보를 통해 전자 평형수 기록부의 사용을 위한 승인과 선박별 설치 후 성능 검증에 따른 선언서(declaration) 발행에 관한 절차 요구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일반사항

**(전자 평형수 기록부 정의)** 전자 평형수 기록부란 BWM 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각 평형수 작업의 기재사항을 하드카피 형태의 기록부 대신 전자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주관청의 승인을 받은 장치 또는 시스템을 의미함

**(적용일자)** BWM 협약 B-2.1 규칙 개정(발효일자: 2025년 10월 1일)에 따라 전자평형수기록부 사용이 허용되며, 결의서 MEPC.372(80)의 기술 요구사항에 따라 주관청의 전자 기록부 승인 및 선박에 대한 선언서 발행이 요구됨

**(기존 하드카피 기록부)** 전자 기록부 및 관련 시스템을 본선에 설치 후 선언서가 발급된 시점부터 하드카피 기록부를 대체하여 전자 기록부를 공식적으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음. BWM 협약 B-2.2

규칙에 따라, 평형수기록부의 기재사항은 최종 기재일로부터 최소 2년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최소 3년간 회사의 관리 하에 보관하여야 함

## 전자 평형수 기록부의 승인

- (a)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전자 평형수 기록부는 결의서 MEPC.372(80)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관청의 승인이 요구됨. 기국 주관청이 직접 승인하지 않는 경우, 주관청으로부터 위임 받은 RO로부터 승인된 제품이 인정 가능함. 주관청 또는 RO의 승인이 없는 경우, 제조사의 요청 시 한국선급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음 (담당부서: 기자재팀)
- (b) **하드웨어 요구사항:** 선언서 발행을 위해서는 본선에 설치된 하드웨어(전자 기록부 및 관련 시스템의 컴퓨터 및 주변장치 포함)가 IEC 60092 및 IEC 60533의 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되어야 함(관련 시험 성적서 또는 증서 확인). 전자 기록부 하드웨어가 동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제조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선급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음 (담당부서: 기자재팀)

## 기능 검사 및 선언서 발행

- (a) 본선에 설치된 전자 평형수 기록부가 결의서 MEPC.372(80)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선박별로 주관청이 발행한 선언서가 제공되고 본선에 비치되어야 함. 주관청으로부터 한국선급에 위임된 경우, 본선에 설치된 전자 기록부가 적합한지 평가한 후 선언서가 발행될 수 있음
- (b) 선언서 발행을 위해서는 설치 및 기능 검사를 위해 검사원 입회 하에 임시검사 시행을 원칙으로 함.
- (c) 전자 기록부 소프트웨어 버전 업데이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 담당부서로부터 재승인 여부의 검토가 요구되며, 소프트웨어가 재승인되는 경우 선언서는 상기 (b) 절차에 따라 재발행해야 함

## 전자 평형수 기록부 사용을 위한 권고 조치사항

- (a) 전자 평형수 기록부를 사용하는 선박은 기국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권한을 부여한 경우 우리 선급에서 발행한 선박별 선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선상 기능 검사 및 선언서 발행을 위해 가까운 우리 선급 지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b) 선언서의 사본은 본선에 비치되어야 함. 관련 검사 중 전자기록부 또는 주관청이 제공한 선언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검증을 위해 기록의 대체 검증 사본이나 하드카피 형태의 기록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c) 평형수기록부의 기재사항은 최종 기재일로부터 최소 2년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최소 3년간 회사의 관리 하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d) 관련 상세 문의는 우리 선급 협약업무팀([convention@krs.co.kr](mailto:convention@krs.c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결의서 MEPC.372(80) - BWM 협약 하의 전자기록부 사용에 관한 지침서(원문)

## 협약본부장

## 한국선급

담당: 권우석 책임검사원

Tel: +82 70 8799 8332

E-mail: [convention@krs.co.kr](mailto:convention@krs.co.kr) / [wskwon@krs.co.kr](mailto:wskwon@krs.co.kr)

### Disclaimer

While every possible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technical information, the Korean Register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any errors or omissions contained herein, nor shall it be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technical information.